

○○초 학교폭력 사건 불공정한 처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

소송종류	민사소송	법원명	인천지방법원
사건번호	2020나○○○○○ [2심]	사건유형	손해배상 기타
원고	○○○ 외 2명	피고	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
판결선고일	[2심]2021. 7. 20. 항소기각	비고	[1심]2020. 9. 15. 원고패
사건개요	<p>○ 원고는 사건 당시 ○○초등학교 학생으로 2018. 1. 31. 교실에서 같은반 친구들과 다툼싸움을 하다가 원고와 소외 ○○○와 다툼이 있었고, 점심식사 후 운동장에서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○○○이 원고의 배를 주먹으로 때렸음. 다음날 소외 △△△가 원고에게 성추행범 같다고 놀리는 등의 학교폭력 사건이 있었음(1차 학교폭력). 이에 학교에서는 ○○○, △△△에게 가해학생의 조치를 내렸음.</p> <p>○ 2018. 10. 19. 점심시간에 학교 운동장에서 원고와 소외 ○○○이 축구를 하던 중 어깨싸움을 한 후 다툼이 생겼고, 조○○이 원고의 등을 돌려 때렸으며, 교실로 돌아온 후 원고와 ○○○ 사이에 다시 시비가 생기고 ○○○이 던진 커터칼이 원고의 가슴에 맞게 됨(2차 학교폭력). 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원고와 ○○○ 모두를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으로 분류하여 원고에게는 서면사과 조치를 ○○○은 특별교육이수 5시간 조치를 하였음.</p> <p>○ 이에 원고는 학교는 보호자를 대리하여 원고를 보호·감독하여야 함에도 임무를 해태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지 못하였으며, 학교폭력의 처리과정에서 피해자에 불과한 원고를 가해자로 분류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등 불공정하게 처리하여 원고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교육청은 감독기관으로서 배상책임이 있다며 소를 제기함.</p>		
주문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 		
판결이유	<p>○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1심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1심 및 2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.</p> <p>○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그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해당교사들이 원고에게 제1차 및 2차 학교폭력이 발생할 것을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원고 이상취에 대한 보고·감독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.</p> <p>○ 증거의 기재만으로 학교가 그 합의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을 협박 또는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합의를 중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함.</p> <p>○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음.</p>		

- 이 사건으로 원고들 모두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일부 교사들이 원고들의 상황과 고통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채 다소 부적절한 발언이나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이 원고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함.